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안 광 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
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인
“시민청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
廳) 운영 및 관리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」 제8조에 의거하여
2019년 7월부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
다.
- 평가 결과, 동 조례 제6조제1호의 시민의 관람권을 침해할
소지가 있는 이용제한 대상자의 범위가 ‘술에 취한 자’의 범

위가 협소하여, 시민의 관람권을 침해하는 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바, 이에 대한 용어의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.

- 이에, 본 의원은 제6조제1호의 ‘술에 취한 자’를 ‘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’로 범위를 넓혀 시민의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